

親試小考·續

康 吉 秀
(教育科)

머 리 말

親試小考 前篇은⁽¹⁾ 傳統的인 王朝時代의 教育에서 “學令”이나 擊蒙要訣이나 “學校模範” 등의 讀書章의 설명 이상으로 實際로 어떠한 지식과 능력과 思考(方式) 등을 배우고 가르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現存하는 資料인 親試의 策題를 분석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친시에는 “策”이외에 “表·箋”등도 있었으므로, 本考는 前편에 이어서 주로 이들 表·箋을 살피고, 그리고 策과 表·箋 등을 그 試題로 한 親試는 어떻게 管理되었는지도 알아보려는 것이다.

I. 前篇의 概要

전편의 개요로서 그 “맺는말”과 策題例 하나를 든다.

1. 개 요⁽²⁾

科擧의 시험에서 무엇을 어떻게 묻고 또 그들 질문과 답을 통해서 무슨 지식이나 능력이 검토되고 함양되었는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科試는 물론 取人 내지 取士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시험을 前後해서 教育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만큼 科試의 내용과 방법은 그대로 教育의 내용과 방법에 至大한 영향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教育史에서 이미 알려진 격몽요결의 讀書章 등 이상으로 어떠한 지식과 능력 내지 思考가 다루어지고 함양되었는가도 알아봄과 함께 科試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科試를 통하여 전통적인 王朝時代 教育에 있어서 어떠한 지식과 능력과 思考方式 등을 배우고 가르쳤는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그 資料는 우선 朝鮮王朝實錄에 기재되어 있는 親試의 策題 60편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들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이 분석과 고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拙稿, 1984. 親試小考, 서울大(師大教育研究所) 教育學研究. 84-2.

(2) 上掲文, pp. 39~41.

P
378-51
6267MS
01

親策은 서기 975년 송나라 태조가 創設한 “科擧 三層制의 殿試”에서 帝王이 親히 試驗하는 策이나 策問을 指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用語는 그렇게 엄격하게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重試와 調聖試 등과 같이 定規試 이외에도 殿庭등에서 임금이 친히 策문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사용되었었다. 한편 여기의 三層制의 殿試는 及落보다도 성적의 序列을 매기는 성격으로 말미암아 詩·論·職 등 여러 科目을 시험하지 않고, 策 하나만으로서도 足하게 되었고, 그것도 주로 時務策으로 시험하게 된 것이다. 하여튼 策은 爲政之道에 관한 논문으로서 天子의 策問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답이라는 對策이 있다. 그리고 策은 보통 天子의 制策과 有司의 試策과 士大夫의 進策 등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또 策은 학술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經策과 時事 논문이라고 할 時務策의 두 종류로 나뉜다. 그런데 親策은 帝王의 “求言”의 성격도 加味되는 데서 시무책으로 시험하는 것이 보통이다. 本考(前篇)의 사례에서도 經策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론 중심의 策은 18례로서 전체의 30% 미만이었다.

한 策題가 다른 영역이나 分野는 평균해서 2개이고 그 안에 있는 질문의 수는 6개정도이고, 그 字數는 역시 평균해서 230字이다. 다시 말해서 한 策題는 대체로 2개 분야에 걸쳐 6개의 질문을 하고 있으며, 그 길이는 230字나 된다. 淸나라의 一題當 4개의 질문에 비하면 우리는 두개 가량이 많으나, 그러나 길이는 70字정도가 짧은 편이다.

이들 모든 策題에서 다루어진 분야는 총 157분야인데, 이를 크게 나누어 보니, 救荒, 正俗, 銓選, 待夷, 武備, 裕民, 田制, 守令, 治體, 議官, 臺諫, 法刑, 爲學 및 經義 등의 14영역으로 볼 수가 있었다. 이들 분야의 明細는 列擧도 했지만, 그 중에서 出題된 頻度順으로 많은 것부터 보려는, 武備 즉 國防(20), 銓選 즉 人事(18), 正俗 즉 風紀 또는 社會道德(17), 및 經義 즉 學識(15) 등인데, 이들 국방, 인사, 풍속, 경의 등이 당시의 중요한 분야로서 전체의 거의 半을 차지하고 있다.

친책의 體裁는 대체로 “求言之教”에 준한 것 같으며, 序言과 本文과 結語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序言은 “王若曰”로 시작되며, 그 아래에 主題에 관한 기본 원리 등의 提示가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더러는 “予以否德”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중간에서 言及되기도 하는데, 이는 “구언교서”의 체재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다. 本文은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의 물음인만큼 대부분은 어느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안이나 이른바 代案을 묻는 것이 常例인 것 같다. 例示하면 “若之何 則…歟; 何以使…歟; 何以 則…歟; 如何 則…乎; 如之何 而可乎; 將何以處之; 其道何由; 可得以聞歟; 및 其術安在” 등등이다. 그리고는 代案을 묻는 것인만큼 이들 질문은 흔히 문제거리와 조건과 특히 論爭點이나, 相反되는 狀況을 제시하고 그것을 다 充足시킬 방안을 묻고 있다. 以上은 주로 시무책의 경우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경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니, 한 개념이나 의미나 이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의 所有를 위하여, 보통은 불분명한 것과 대조적인 것과

상반되는 것 등을 제시하면서 그 각각에 대한 뚜렷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結語에는 “子大夫”로 시작하여 “通經術 識治體”와 “講之熟矣” 등이 있고, 그리고 거의 다 “悉心以對 또는 悉陳無隱 予將親覽 而施用焉”으로서 끝을 맺고 있다.

한편 “稽諸歷代 酌乎時宜”로서 생각과 답안쓰는 방식까지도 중요시하여 結言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들 策試를 통하여 과학적 思考力의 기초라고 할 “어떻게 또는 how”에 대해서 至大한 관심을 기우리고 그리고 그것을 함양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다.

2. 策題例⁽³⁾

그 體裁에 있어서 위에서 살핀 序言과 本文과 結言의 세 부분에 걸쳐 각기 필요한 項目이나 要素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어서 可히 대표적인 策題라고 할수 있는 太宗 七年(1407)의 丁亥 重試[는 아래와 같다.]

王은 이르노라

옛날 帝王이 法을 세우고 制度를 정함에 반드시 時宜에 인하여 至治를 융성하게 하였으니, 唐虞(堯舜의 시대)와 三代(夏·殷·周)의 治平을 이룬 道를 들을 수 있겠는가?

精一과 執中은 堯·舜·禹가 서로 준 心法이고, 建中 建極은 商湯(商나라 湯王)·周武(周나라 武王)가 서로 傳한 心法인데,

精이니 一이니 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떻게 다르며, 執이니 建이니 하는 것은 그 뜻이 어떻게 같은가?

中이라고 말하면 極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고, 極이라고 말하면 中에 지나는 것 같으니 이 두가지를 장차 어떻게 折衷할 것인가?

禮讓하고 征伐하는 것과 文華·質朴을 더하고 덜하는 것이 일과 때가 다른데, 함께 다스림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漢·唐 나라 이후에서 宋·元 나라에 이르기까지 代마다 각각 다스림이 있었는데 中道에 습하여 말할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否德한 사람으로 한 나라의 臣民의 위에 臨하여 비록 德教가 백성에게 미친 것이 없으나, 거의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小康을 이루기를 생각하고, 帝王의 마음과 道에 일치기 뜻이 있어 배우기를 願하여, 政事를 듣는 여가에 經籍을 보고 그 뜻을 강구하였으나 힘을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動靜(행동)·云爲(말)의 즘음과 政教·法令의 사이에 어찌 지나치고 不及하는 어긋남이 없었겠는가? 지나쳐서 마땅히 덜어야 할 것은 무슨 일이며,

(3) 上揭文, pp. 27과 29~31인데 이 策題의 原文(pp. 28~29)은 太宗實錄 卷十三, pp. 176~186(探求堂 影印 縮刷版 朝鮮王朝實錄 I <1668>, p. 390에 있고, 번역은 약간의 변경을 빼고는 태종실록 3(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5), pp. 40~41을 거의 그대로 따랐음.

不及하여 마땅히 보태야 할 것은 무슨 일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創業한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法制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遷都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役事가 아직 그치지 않으니, 政治의 得失과 田里의 喜憂에 말할 것이 많다. 우선 그 큰 것을 들어 말한다면, 銓選은 精하게 하려 하나, 요행으로 속여 나오는 것이 除去되지 않으니 공적을 상고하는 法이 어떻게 事宜에 합당하겠는가?

田制를 바꾸고자 하나, 多寡와 高下가 고르지 못하니 踏驗(논밭에 가서 실지로 損失을 조사)하는 일이 과연 의논할 것이 없겠는가?

賦役은 고르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隣保의 제도와 號牌의 시설은 어떤 것이 행할 수 있는 것인가?

漕轉은 급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海運의 모척과 陸輸의 계책은 어떤 것이 쓸만한 것인가?

衣冠의 法度는 모두 중국의 제도를 따르는데, 오직 女服만은 오히려 옛 풍속을 따르고 있으니, 이것은 과연 다 고칠 수 없는 것인가?

冠婚喪制도 또한 다 중국의 제도를 따라야 할 것인가?

무릇 이들 두어가지는 施爲하는 道가 반드시 그 마땅함이 있을 것이다. 옛것에 어그러지지 않고 지금에 駭怪하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賢俊들과 더불어 庶政을 함께 도모코자 생각하여 子大夫들을 親히 뜰(宮庭)에서 策問하는 바이니, 政事를 하는 說을 듣기를 願하노라.

子大夫들은 經術을 통달하고 治體를 알아서 이 세상에 뜻을 둔지가 오래이니, “帝王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림을 내는 도리와 지금의 法을 세우고 制度를 定하는 마땅함을 예전의 教訓에 상고하고 시대에 맞는 것을 참작하여 높아도 구차하고 어려운 것에 힘쓰지 않고, 낮아도 더럽고 천한 데에 흐르지 않도록 각각 포부를 다하여 모두 글에 나타내어라. 내가 장차 친히 보고 쓸지니라.

이제 읽어서 알수 있드시, 이 策題는 王若曰에서 시작하여 큰 主題의 핵심인 “立法定制”가 序頭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歷代(중국)의 事蹟을 묻되, 근본 원리의 이론적인 究明과 한편 相反되는 事例에 대한 해석도 요구하며, 이들에 대하여 王은 스스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나 어디에 不足함이 있는지 등을 묻는 求言教書의 樣式을 갖추고, 國政의 실제 즉 여러 時務에 대한 해결 내지 실시의 方案을 그 論爭點 등을 중심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不戾乎古而不駭於今하게 稽諸教訓·酌乎時中”하라는 方法上의 注意와 賢俊으로 子大夫를 높히는 待遇 등이 눈에 띈다. 책체 전체가 格調높은 문장이라는 감이 든다.

II. 詩와 文 등

1. 概 觀

여기서 살펴려는 여러 試題는 朝解王朝實錄에 記載되어 있는 親試의 表·箋 등으로 모두 19篇이 되며, 그의 實錄別 明細는 <표 1>과 같은데, 前篇의 策題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⁴⁾ 60편이었다.

이들 중 가장 많았던 것은 表로서 8편이고, 論은 4편, 그리고 箋과 賦와 詩는 각각 2편이다. 또 이들이 가장 많이 시험되었던 것은 성종대인데, 표(5편)·논(2편)·부(1편)와 시(1편) 등으로 모두 9편이다. 여기서 전편의 “策”을 합하여 보면, 태종대에는 책이 2편으로 모두 4편이 되고, 세종대에는 책 9편을 합쳐서 12편이 되며, 문종과 단종 때에는 각각 책만이 2편씩이고, 세조대에는 책이 18편으로 20편이 되며, 예종대에는 책 1편을 합하여 2편이 되고, 성종대에는 책이 21편이나 되니까 30편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연산군 때에는 책 5편을 합하여 7편이 되어서 결국 策은 모두 60편이고 이에 詩文과 明徑의 試題를 합하여 모두 79편이 實錄에 남아 있는 것이다.⁽⁵⁾

그리고 이들의 시험이 치루어졌던 경우에 따른, 즉 科擧三層制의 최종단계 또는 定規試의 “殿試”에서와 그 밖의 여러 親試에 따른, 명제는 <표 2>와 같다.

태종대는 한 번의 重試에서 논과 표의 둘이 함께 初場으로 出題(併試)되고, 終場에서의 策(앞에 든 實例)과⁽⁶⁾ 더불어 시험(兼試)되고, 예종대의 한번과 연산군 때의 두번 그래서 세 번은 다 策과 함께 “표와 부와 논”의 셋이 각각 시험(兼試)되었다. 明徑科의 시험은 세조대에 한번 있었고, 詩는 세조대의 두번과 성종대의 한번으로 모두 세번이 출제(併試)되었

<표 1> 實錄別 詩文의 試題

		表	論	箋	賦	詩	(明徑)
太	宗	2	1	1			
世	宗	3	1	2			
文	宗						
端	宗						
世	祖	2				1	1
睿	宗	1	1				
成	宗	9	5	2	1	1	
燕	山 君	2		1	1		
		19	8	4	2	2	1

(4) 本稿, p. 9.

(5) 前掲拙稿, pp. 2~4.

(6) 本稿 pp. 20~28.

〈표 2〉 親試別 詩文의 試題

	計	三層殿試	其他殿試			明倫堂試
			小計	別試	重試	
太宗	2(一)		2(一)		2(一) b·a	
世宗	3		2	1a	1c	1c
文宗						
端宗	2		2	2Y·X		
世祖	1		1	1a		
睿宗	9(三)	2(一) a·b	4(二)	2(一) a·X	2(一) d·a	3 a·a·b
成宗						
君燕山	2	1d	1	1b		
	19(四)	3(一)	12(三)	7(一)	5(二)	4

1) a는 表, b는 論, c는 箋, d는 賦이고; X는 詩; Y는 明經임.

2) 고직은 “策”과 兼試된 것임.

3) 漢數字는 詩·文題만이 併試된 것임.

다. 성종대의 詩·文試題는 9편이 남아 있지만, 이는 여섯번의 시험에서 出題되었던 것이니, “삼층전시”와 別試와 重試 등 세번의 殿試에서 각각 들씩 즉 “표와 논; 표와 시; 부와 표”가 출제(併試)되고, 그리고 明倫堂에서의 親試로서 “표 2번·논 1번으로” 3번이 출제되었다. 한편 이들 詩·文의 試題가 삼층 또는 式年 전시에 출제된 것은 책과의 兼試전 表 등과의 併試기간에 각각 한번씩으로 두번(그러나 부; 표·논의 세편)에 불과하다.

하여튼 策 이외의 試題 즉 詩·文의 시제는 표·논·전·부의 네 文體와 詩와 명경과의 여섯가지인데, 이들은 前篇에서 살폈듯이⁷⁾ 宋나라 太宗 三年(978년)에 科擧三層制殿試의 “시·부·논 三題”로 확립되었다가, 약 90년 후 즉 宋 神宗 三年(1070년)에 王安石의 殿試改革으로 廢止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1070년 이후에는 明·清代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는 殿試에서 “시·부·논 삼제” 대신에 “책”만을 시험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그 90년여에 걸쳤던 “시·부·논”의 先例 내지 傳統을 잊지 않으려는 듯 本稿에서 다른 詩·文의 試題를 “策”과 함께 兼試하거나 책과는 別途로 한 文體만의 單獨試거나 또는 두 문체를 併試한 것 같다.

2. 뜻

이들 詩와 여러 文體 및 明經의 뜻을 차례로 알아 본다.⁸⁾ 먼저 「詩」는 “말(語)을 장식

(7) 前掲拙稿, p. 8.

(8) 이들 文體의 뜻은 權威書로 손꼽히는 明나라 徐師曾의 文體明辨(84卷)을 주로 引用하면서 풀이한 諸橋轍次(1955~1960) 大漢和辭典(東京:大修館書店, 昭和三十年~三十五年; 縮寫版 第二刷, 1968<昭和四十四年>, 卷四, pp. 825~826(律詩); 卷五, p. 769(明經); 卷七, pp. 599~600(箋. 箋은 卷八, p. 794에 있으나 같은 字로 쓰이는 牋에 그 풀이가 있음); 卷八, pp. 1041~1042(絶

하고, 운(韻)을 법칙에 맞추며 생각(想)을 노래(歌)하기에 적합하도록 한 詞章이다. 그 體는 詩經과 같이 四言句도 많지만 五言體와 七言體가 보통이다. 詩는 唐나라 때에 考詩하게 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詩는 律詩와 絕句 등 近體詩와 舊來의, 즉 隋나라 이전의 五言·七言 등의, 體인 古詩로 二大分되었다. 律詩는 聲律이 있는 詩라는 뜻이고, 八句로 성립하는데, 二句씩을 一組로 하는 聯이 넷이 있으니, 起聯(첫째 둘째귀), 前聯(頷聯:셋째 넷째귀), 頸聯(後聯:다섯째 여섯째귀), 및 尾聯(일곱째 여덟째귀)의 四聯이다. 여기의 기련은 叢句 미련은 落句라고도 하며, 전련과 후련은 對句를 사용하고 그리고 읊시는 五言律과 七言律의 두가지가 보통이다. 絕句는 小律詩 또는 半律이라고도 하며, 起·承·轉·結 즉 기귀·승귀·전귀·결귀의 네귀로 성립하는데, 그 各句가 五言이면 오언절귀, 七言이면 칠언절귀라고 한다. 하여튼 詩가 “생각(思)”이라는 點을 詩經은 “마음에 있으면 뜻(志)이고 말로 發하면 詩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다음에 「表」는 “事理를 밝혀 君上에게 告하는 文章 또는 글”이다. 이 글체(文體)는 漢나라 때에 陳情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후세에도 이를 따랐는데, 그 용도는 차츰 늘어나서 論諫, 請勸, 陳乞, 進獻, 推薦, 慶賀, 慰安, 辭解, 陳謝, 訟理 및 彈劾 등 11가지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文選의 注를 보면 “表는 事理를 밝게 標해서 主上으로 하여금 계단계 하여 그 忠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글”인데, 이 盡忠의 뜻까지를 포함한 表의 유명한 例로서 諸葛孔明의 出師表가 있다.

「論」은 “자기의 의견을 述하여 주장하는 글”로서 理論, 政論, 經論, 史論, 文論, 諷論, 寓論 및 說論의 여덟가지가 있다. 그런데 劉協에 따르면⁽⁹⁾ 논은 群言의 秩序를 세우고 衆理를 연구한다는 뜻도 있다.

「箋」은 牋과 같은 글자인데, “君上에게 올리는 글”이니, 上書·上表의 뜻이다. 箋는 漢과 魏나라 때에는 天子·太子·諸王·大臣에게 올리는 글의 총칭이었으나, 후세에 와서 天子에게 올리는 글은 表라고 하고 그리고 諸王에게 啓 또 皇后太子에게 牋을 각각 사용했던 것이다. 後漢에서는 “牋”자를 즐겨 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실록에는 거의 다 “箋”으로 씌어 있다.

「賦」는 詩로서는 그 六義 중의 하나로서 “마음(心)에 느낀 것(感)을 사실 그대로 읊은(詠) 것”인데,⁽¹⁰⁾ 文體 또는 글체로서는 “일(事)을 배풀고(陳) 풍유하는(諷誦) 뜻을 부쳐서 上의 鑑戒의 도움이 되는 글”을 말한다. 부에는 興과 비유를 주로 하는 古賦와 말(辭)을 존중하여 情이 적은 俳賦와 이치(理)를 존중하여 辭가 짧은 文賦 및 唐나라 체로서 音律과 聲調를 주로 하는 律賦 등의 넷이 있다. 晚唐의 율부는 古事를 주제로 하여 마음 슬프고

句); 그리고 卷十, pp. 176~177(表), p. 441(詩), p. 517(論), 및 pp. 768~769(賦)를 참조하였음.

(9) 이는 梁나라 사람으로, 文心彫龍을 撰하였는데, 거기에서 이와같이 말하였다고 文體明辨에 씌어 있음.

(10) 周禮 春官 大師의 “教六詩”에 風·賦·比·興·雅·頌의 둘째인(諸橋, 卷十, p. 769).

쓰라린 뜻을 부친(寓) 것이 많았다고 하니, 아마도 이의 예가 될 것은 유명한 蘇東坡의 赤壁賦가 있다.

「明經」은 두 말할 것도 없이 詩·文은 아니고 “聖人の 經書를 분명히 안다”는 뜻으로서 科擧의 한 科目인 것이다. 그런데 唐代의 明經科는 策問도 課하였지만 宋代에서는 주로 帖書 墨義 즉 經書 중의 문귀나 뜻을 筆答케 하였는데, 이것이 記諷에만 치우치는데서 明經科는 衰落하고 급기야 폐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¹¹⁾ 하여튼 이들 文體는 科擧에서 뿐만 아니라, 成均館에서도 課하였으니, 그 “學令”을 보면, 매달의 글짓기 또는 製述에 있어서 頌이나 銘들과 같은 다른 글체와 함께 初旬에는 논을, 中旬에는 부와표를 그리고 下旬에는 대책을 짓되 楷書하도록 했던 것이다.

3. 試 題

먼저 表인데

- 1) 태종 七年(1407) 4월의 “賀平安南”은 明나라 成祖(永樂帝)가 그 前年 안남을 大破한 것을 축하하는 글(을 표로 쓰라는 것이다).⁽¹²⁾
- 2) 세종 九年(1427) 3월의 “擬本國請免金銀方物表”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바치는 우리의 특산물 즉 方物 중 金과 銀을 免除해 줄 것을 청하는 글.⁽¹³⁾
- 3) 예종 元年(1469) 10월의 “擬唐秦王世民賀平定竇建德·王世充”은 唐나라 秦王 世民(後의 太宗)이 隋末 混亂期에 稱帝한 竇建德·王世充을 戰伐하여 斬한 것을 축하하는 글.
- 4) 성종 八年(1477) 8월의 “本國請許牧買弓角表”는 우리나라가 할 만드는데 쓸 황소의 뿔 즉 弓角을 중국에서 사들이는 것을 許諾하도록 청하는 글.
- 5) 성종 九年(1478) 12월의 “擬周室群臣賀親迎周公表”는 周나라 王室과 여러 臣下가 成王의 叔父인 周公을 친히 맞이함(踐阼?)을 축하하는 글
- 6) 성종 十年(1479) 2월의 “擬商室群臣請停遷都表”는 商나라 王室과 群臣이——殷으로 國號를 고친 제17대 왕 盤庚이 水害를 피하여 黃河 등의 南쪽으로 천도하려고 할 때 많았던 反對?——遷都를 중지할 것을 청하는 글
- 7) 성종 十一年(1480) 2월의 “擬唐宰相乞貸韓愈貶潮州表”는 唐나라 재상이 憲宗에게 佛骨表를 올린 한 죄를 조주로 귀양보내기를 고킨다는 글.
- 8) 성종 十四年(1483) 3월의 “擬唐李泌請辭職還山表”는 唐나라 肅宗에게 名臣 이 필이

(11) 荒木 敏一. 1969. 宋代科擧制度研究(京都: 東洋史研究會, 昭和 四十四年), pp. 346~362.

(12) 아래에 各題 說明의 끝맺음도 다 이와같이 되었는데, 그러면 같은 말이 너무 중복되므로 다음 題의 설명 끝부터는 괄호안의 것을 省略하겠음.

(13) 이것도 “글(을 表로 쓰라는 것이다)”와 같이 되는데, 위의 註를 따라 괄호 안의 것을 省略했음.

—신선술을 익히고져 終南山 등에 ?—돌아가려고 사직을 청하는 글.

이상에서 알 수 있드시 表題는 그 내용과 자료를 주로 중국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쓰도록 하였으나 한편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外交的 문제와 같은 時事 문제도 다루고 있어 前篇에서 살핀 策의 내용과도 비슷하여 이론과 실제의 둘에 다 걸쳐있었다.

다음에 論인데

1) 태종 七年(1407) 4월의 “關四門”은 書經 舜典의 문귀로서 登龍의 길을 넓혀 천하의 賢俊을 구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意見을 적어 主張하는 글.

2) 성종 十四年(1483) 3월의 “臯夔稷契讀何書論”은 堯舜 시대의 名臣인 고 도(臯陶)와 기와 文王의 祖上인 적과 殷나라 湯王의 조상인 설 즉 고기적설 등 네사람이—입을만한 책이 없었어도 名臣이 되었는데—무슨 책을 읽었는가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장하는 글.

3) 성종 十九年(1488) 4월의 “周公撻伯禽論”은 주공이 그 아들 백금과 아우 康叔을 세 번 볼기 친 故事로서 子弟를 잘 교훈한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장하는 글.

4) 연산군 二年(1496) 4월의 “徐 偃王行仁義論”은 周나라때 서 연왕이 자기를 따르는 諸侯國을 사랑하여 싸우지 않고 楚나라에 敗한 것을 仁義를 지켰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장하는 글.

이 論題도 대체로 앞의 표제와 같으니, 그 자료가 거의 다 중국의 故事인데, 그들에 대한 의견의 주장을 묻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론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箋인데

1) 세종 十一年(1429) 5월의 “擬贊成權 近進幽風七月圖箋”은 찬성 권 근이 詩經 國風의 하나로서 농사일에 부지런하라고 권장하는 “빈풍 칠월의 시”의 그림을 임금께 바치면서 올리는 글.

2) 세종 二十九(1447) 8월의 “擬集賢殿進八駿圖箋”은 집현전이 태조의 나라를 진정하는 일을 도우면서 여덟 마리의 뛰어난 말의 그림을⁽¹⁴⁾ 임금께 바치면서 올리는 글.

이 두 箋題는 세종대의 名著 農事直說(11년 5월)과 조선조 건국의 偉績을 읊은 최초의 한글 歌辭이고 팔준마도 포함되어 있는 “龍飛御天歌”(29년 2월)가 완성되고 얼마되지 않은 같은 해에 출제되었는데, 이 점에서 각각 그 관련이 있었을 것 같다.

다음에 賦인데

1) 성종 十年(1479) 2월의 “明鏡賦”는 삼국지 吳志의 “밝은 거울에 형상을 비추어 보듯

(14) 이 그림은 朝鮮朝 初葉의 有名한 畫家 安堅이 그렸다고 한다(李基奭, 1985. 龍飛御天歌<서울: 弘新文化社, p. 209>).

이 옛일을 보고 지금에 참조한다”는 文句이나 이에 관한 諷誦과 鑑戒의 글.

2) 연산군 七年(1501) 4월의 “罰不及嗣 賞延于世賦”는 書經에 순임금이 죄를 범한 사람을 벌을 주지만 그 자손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는고, 상은 후세에까지 뻗게 하였다는 문귀인데 이에 관한 풍유와 감계의 글.

그리고 詩인데

1) 세조 十一年(1466) 5월의 拔英試는

王道無不同 孰得而孰失

何捨而何取 何懲而何法

으로 끝나는 五言絶句의 御製詩 九章을 출제하여 이에 韻을 맞추어 시를 지어 올리게(和進)한 것이다. 그 9장의 시를 통하여 요·순에서 비롯하여 하·은·주 삼대, 진·한 및 당·송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 歷代의 史實을 王道의 득실과 취사에 비추어 물으면서 결국 나라다스리는 道를 묻고 있다.

2) 성종 九年(1478) 12월의 “萊公竹 古詩는 宋나라 眞宗때의 宰相이었던 寇準(封號가 萊公)이 귀양가서 卒하자 歸葬하는 길 도중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꺾어서 꺾은 대나무에 순이 나왔다는 故事를 句數 등에 제한없는 五言·七言體 즉 古詩로 지으라는 것이다.

끝으로 明經인데

1) 세조 六年(1460) 7월에는 四書의 하나인 中庸과 역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한 朱子の 易學啓蒙을 講하고 그리고 또 宋나라 江贄(賜號가 少微)의 史書인 少微通鑑에서 “漢의 高祖와 西楚의 項羽 중 누가 正大한가”를 물었다.⁽¹⁵⁾

이상은 여러 文體別의 試題인데, 대체로 아래와 같은 여러도서를 잘 읽어야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龍飛御天歌를 비롯하여 증용과 시경, 서경, 춘추좌씨전, 역학 계몽, 및 예기 등 사서·오경에 속하는 것과 시기, 전·후한서, 삼국지, 북사, 신·구당서, 송사 및 소미통감 등의 史書와 그 밖에 淮南子(漢나라 劉安 撰; 原道, 兵略등을 실은 雜書) 및 困學紀聞(宋나라 王應麟 撰; 說經, 考史 등을 실은 雜家類) 등이다. 그리하여 擧子是 당시의 經史를 존중한 교육과정 全般에 걸쳐 공부하여 알고 있어야 했다.

Ⅲ. 親試의 管理

1. 出題

친시나 殿試의 策題 즉 試題는, 세종의 이른바 “古書에 있기를 비록 친시이라도 임금이

(15) 이의 答으로 세조는 “漢高正大”를 取했음.

친히 스스로 문제를 낼 필요는 없다(세종 二十六年<1444> 1월 24일)”와 같이, 보통 임금이 讀卷官 즉 고시관 등 관계관을 便殿 등 대궐에서 引見하고 內殿으로 들어가 비밀히 의논하여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세종 十四年(1432) 4월 12일조를 보면, 이때에 관계관들이 의논하여 啓奏하는 형식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또는 이들이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문제를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금이 글제를 대강 구상·출제하여 관계관의 의견을 참작하며 결정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策題 앞뒤에 “御製 또는 親製”라고 附記되어 있는 것이 9題(세조때 7문제와 성종때 2문제)나 되는데, 이들은 이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여튼 위의 1432년 4월 12일조에 따르면, 세종은 1) 義倉之議, 2) 糧餉의 비축, 3) 競奔競 및 4) 禁風聞 등 항목을 고시관에 제시하면서 의견을 물었던 바 讀卷官 孟思誠 등이 내제 것인 “禁風聞”을 “辨尊卑”로 바꿀 것을 계주하여 그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것은 뜬소문에 관한 문제가 儒生에게 책의 문제로 내기에는 매우 뜻이 아름답지 못하다면서, 그 대신에 아랫 사람이 이웃 사람을 업신여기는 조짐을 경계해야 할 문제로 책을 짓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말하자면, 試題의 내용상의 변경인 것이다. 한편 이와는달리 그 출제 과정에서 문구나 낱말의 변경도 있었으니, 문종은 즉위년(1450) 10월 9일 勤政殿에서의 庭策시험 전날인 8일밤 늦게 내시도 물리치고 都承旨 李季甸, 좌승지 鄭而漢 및 집헌전 直提學 朴彭年 등을 引見하고 “求賢從諫 寡欲匪懈”를 포함하여 다섯 개의 제목을 제시하였다. 李季甸 등은 이 제목이 가장 좋다고 하면서 다만 여기의 匪懈 즉 게을리 하지않겠음을 勤政 즉 정사에 부지런하겠음으로 바꿀 것을 계주하여 고친 일도 있다.

2. 考試官

殿試 내지 친시의 考試官은 고려조이래로 知貢擧·同知貢擧이었으나, 이 지공거 동지공거에 따른 座主·門生の 弊法이 폐지된 태종 十三年(1413) 이후에는 讀卷官과 對讀官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413년 이전에도 한번은 즉 앞의 章에 실은 策題例가 출제된 태종 七年(1407) 4월 18일의 조선조 최초의 重試와 친사에서 독권관과 대독관으로 되었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태종이 이때쯤부터 좌주·문생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뜻이 있어서 그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하여튼 전시와 친시의 고시관은 독권관과 대독관인데, 독권관은 上席試官으로 임금앞에서 과거 응시자 즉 擧子들이 제출한 답안지 내지 試卷을 낭독하기도 했던 것 같다. 대독관은 副試官이다. 大典會通(禮典, 諸科一式年文科殿試)에 의하면 독권관은 議政한 사람과 從二品 이상에서 두 사람 그리고 대독관은 正三品 이하에서 네 사람으로 되어 있다. 試官은 초시의 경우는 吏曹에서 그리고 복시면 禮曹에서 각각 후보를 내는데, 전시나 庭試 즉 친시에 있어서는 承政院이 역시 文望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내어 落點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서 殿試 독권관에 관한 흥미로운 중국의 故事하나를 소개한다. 즉 宋나라 전시에서

試券의 심사 내지 채점이 끝나고 시험관이 최우수로 인정한 약 10명의 시권이 御前に 제출되면 天子는 이들 시권을 독권관으로 하여금 읽게 하여 그것을 듣고서 최종적인 序列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北宋 때에 戶部侍郎까지 지낸 왕 먼(王沔)이라는 독권관은 그 낭독하는 음성이 아주 좋아서 그가 讀卷한 시권이 많이 上位로 뽑혔고 그래서 많은 거자들이 시권을 바칠때 왕 먼이 읽어주는 행운을 바랐다는 이야기이다.⁽¹⁶⁾

하여튼 여기서 대독관은 독권관을 돕는 시관이므로, 宋나라 科擧 제 2층의 시험인 省試의 對讀官과 명칭은 같아도 그 하는 일은 다르다는 점에 注意를 해야 하겠다. 즉 성시의 대독관은 騰錄官(寫字官)이 옮겨 배긴 시권과 元來의 시권을 대조하고 對讀하면서 改書한 것에 빠진 것과 틀린 것이 없는가를 살피고 訂正하는 일을 맡고 있어서⁽¹⁷⁾ 마치 우리나라의 查同官과 같은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잘 알려져 있듯이, 과거시험의 답안 심사 내지 채점에서는 考試官이 응시자의 筆體를 알아서 私情을 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배끼게 하여, 그 易書한 답안을 가지고 심사하게 되어 있어서, 원답안과 다시 쓴 답안 사이에는 脫誤가 없어야 하는 까닭에 대조·대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查同官과 함께 校同官도 역사의 탈오를 조사하는데, 지동관은 주로 답안 중에 表·賦와 詩 및 策 등을 분류·정리하였다. 아들 사동관과 지동관은 成均館員 중에서 임명되었다. 이밖에 시권 오른편 끝에 응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사조(父·祖·曾祖와 外祖) 등을 쓰고 봉하여 붙이는 봉미관(封彌官)도 있었다.⁽¹⁹⁾

되풀이가 되지만, 중국 省試의 대독관과 우리나라의 대독관은 判異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권관과 대독관은 시험후의 심사나 채점은 물론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험전의 出題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것이다. 하여튼 고시관의 시권 심사는 “大提擧(正二品)이 있으면 대제학이 執筆 즉 붓을 들어 잘 된 것에 동그라미와 점을 주어 及落의 석차를 定했다.” 이 及落에 중요한 규정의 하나는 앞서 말한 바 있는 “學令”의 製述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답안에 기벽한 말을 쓰며는 낙제”로 하였던 것이다.⁽²⁰⁾ 다시 전 시 내지 친시고시관의 성적 결정으로 돌아가서, 대체로는 이들의 결정으로 끝이 나지만 임금의 뜻으로 결정과 변경이 되기도 하였다. 그 한 例로서 태종 十四年(1414) 3월 11일조를 보면, 이 해 甲午 式年試의 문과 전시의 壯元은 鄭麟趾이었는데,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이 되었었다. 즉 태종은 領春秋館事 河崙, 知春秋館事 鄭擢 및 禮曹判書 僕眉壽 등에게 命하여 讀券 즉 시권을 읽고 等第를 매기게 하였던바, 하운 등이 책의 답안통 3을 골라 代言 卓愼에게 주어서 바치면서 “壯元은 臣 등이 가히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라고 아뢰

(16) 荒木, p. 330.

(17) 上揭書, pp. 218~219.

(18) 大典會通 禮典, 諸科(舊朝鮮總督府本 <1939>, p. 297).

(19) 上揭本, p. 304.

(20) 여기의 “執筆”과, “奇僻한 말”도 上揭本, pp. 298과 302.

어 결국 임금은 그 셋 중에서 정 인지를 결정 내렸던 것이다.

3. 殿試儀와 放榜儀

전시는 그 當日과 及落 발표때에 일정한 儀式에 의하여 진행되었었다. 그 의식은, 좀 길지 모르지만 親試의 중요한 장면을 짐작해본다는 뜻으로, 세종 十一年(1429) 정월 24일에 제정된 文科殿試儀와⁽²¹⁾ 동 十六年(1434) 3월 7일의 文武科放榜儀注를⁽²²⁾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文科殿試儀인데 :

시험 하루 앞서 繕工監(토목과 영선을 맡아본 관청)에서 題板을 殿庭의 東西에 설치한다. 當日에 닭이 울면 赴試生(응시자)들이 대궐문 밖에 집합한다.

質明(날이 밝으려 할 때)에 이르러 三殿(세번의 북)이 울리면 侍臣이 먼저 전정으로 나아가 東西로 나누어 서고, 다음에 赴試生을 인솔하여 함께 入庭하여 北向하고 선다.

中禁(임금의 경호를 맡은 別監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짊을 띄워 향로에서 연기가 오르고 임금(殿下)이 나와 자리에 오른다.

侍臣들이 가로줄을 지어 四拜禮를 행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奉禮部(나라의 큰 儀式에서 종친과 문무백관을 인도하던 사람)가 독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겹줄로 北向하여 선다.

通贊(나라의 儀式의 절차를 큰 소리로 외쳐 진행시키던 사람)이 “국궁(鞠躬), 四拜, 興, 平身”을 커다랗게 외치면 독권관과 응시자들은 모두 몸을 굽혀서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그 다음에 독권관을 인도하여 東階로 殿에 올라가서 제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이보다도 앞서 有司(관계 담당관)는 독권관 二品이상의 자리를 東壁에 설치하고 三品 이하의 자리는 南쪽 줄에 東으로 가까이 설치하며 또 응시자들의 자리는 東西廊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代言이 임금의 명령을 전하면 通禮門(나라의 의식을 관장했던 通禮院의 正三品職)이 “教旨가 있다”고 稱한다. 응시자들은 모두 俯伏하고, 그리고 通禮門이 試題를 題板 위에 붙이면 응시자들은 일어난다.

임금이 안으로 들어가고 侍臣들이 나가면 赴試生들은 나아가 試題를 베껴 써 가지고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서 날이 어둡기 전에 卷子(답안)를 바치고 나간다.

이리하여 殿試는 임금의 親臨下에 殿庭에서 행하였으며, 그래서 전시는 또는 庭試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고시관인 讀卷官도 응시자와 함께 參席하며 “어둡기 전에 모두 시권을

(21) 그 내용은 세종실록 6(세종대왕 기념사업회의 國譯書, 1969), pp. 363~364를 참조하였음. 그리고 같은 날 文科殿試儀도 함께 制定되었음.

(22) 이 儀注는 이보다 앞서 세종 十一年(1429) 정월 24일에 制定된 放榜儀를 補充하여 보다 더 詳細한 것이어서 좀 길지만 소개하였고 그리고 번역은 세종실록 10(國譯書, 1970), pp. 128~131을 참조하였음.

바치게 했으니” 시험은 하루에 끝났던 것이다. 전시는 아니지만, 親試인 태종 十四年(1414) 7월 17일의 明倫堂에서의 시험도 “오후 5시반쯤에(以酉初一刻爲限) 끝내기로 하고 이를 白日場의 시초라고 하였다. 그후 “백일장”은 학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各地方에서 儒生을 모아 詩文을 짓게 하던 시험을 뜻하게 된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시험이 어둡기 전에 끝났다는 점에서 殿試도 백일장의 樣式을 취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文武科放榜儀注인데 :

하루 앞서 有司가 임금(殿下)의 좌석을 勤政殿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두개를 앞기둥 밖에 좌우로 설치하고, 典樂(掌樂院의 正六品의 事務가 아닌 雜務職員)이 軒懸(현현: 북 등을 거는 틀)을 殿庭에 배풀고, 麾(휘: 雅樂 연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旗)를 드는 자리를 殿上의 서계의 서쪽에 설치하기를 모두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당일에 典儀(큰 의식의 모든 절차를 맡아 진행시키던 執事官)가 文官 一품 이하의 자리를 殿庭의 길 동쪽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모두 겹질로 서향하여 북쪽을 위로 삼아 설치하고, 宗室과 武官 一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으로 가깝게 문관과 상당하도록 설치하되 모두 겹질로 동향하여 북쪽을 위로 삼아 설치하는데 宗室은 품마다 班頭에 따로 자리를 설치하고 大君은 특별히 正一品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監察(司憲府의 正六品職) 두 사람의 자리는 文武班 뒤에다 설치한다.

殿下의 典儀의 자리는 전상 동계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判通禮·階下의 典儀·文科唱榜官·武科唱榜官·致詞官·吏曹正郎·兵曹正郎의 자리를 軒懸 동북쪽에 설치하며, 通贊 한사람은 그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通贊한 사람은 현현의 서북쪽에 동향하여 있게 하다.

諸生의 자리는 殿庭에 설치하되 文은 동쪽에 武는 서쪽으로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질로 북향하게 하고 相對해서 머리가 되게 한다.

奉禮郎이 종실 및 문무 群官의 목박 자리를 弘禮門 안에 설치하기를 평상의 의식과 같이 한다.

북이 初嚴을 올리면 兵曹에서 여러 衛로 하여금 儀仗을 배풀어 문에서 있고, 殿庭에 벌여서게 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有司가 榜案과 紅牌案(모두 函에 들어 있음)을 임금의 자리 앞 좌우에, 문관은 왼쪽으로 무관은 오른쪽으로 있게 하며, 모두 榜은 북쪽에 있고 紅牌는 남쪽에 있게 한다.

唱榜하는 자리는 殿階 위에 좌우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깝게 마주보게 설치하는데 문관은 왼쪽으로 무관은 오른쪽으로 한다.

종실과 문무 群官이 모두 朝榜(대궐문 옆에 朝臣들이 朝會시간을 기다리는데 머물러 쉬는 집)으로 집합하되 각기 朝報(조참의 예복)을 입으며, 문무과의 諸生은 모두 光化門 밖

으로 집합하되 자기 정식 官服을 입는다.

二殿의 북이 울리면 종실과 문무 群官이 모두 문밖의 자리로 나아가고 문무과의 諸生은 모두 弘禮門 밖으로 나아간다.

判通禮가 中殿을 아뢰어 청하면 임금이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思政殿으로 나와 앉는데 有司가 산선(緞扇:베로 우산같이 만듬)을 베풀고 侍衛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承旨와 備身上護軍·扶策上護軍·史官 등 近臣과 判通禮·典儀·文科唱榜官·武科唱榜官·致詞官·吏兵曹正郎·通贊·監察 등 執事官이 먼저 사배례를 행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典樂이 樂工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協律郎(나라의 祭享 등에서 연주하던 사람)이 들어가서 麀를 드는 자리에 나아가면, 모든 侍衛하는 관원들은 자기 복색과 기구를 갖추며 상서관(尙瑞官:어보 등을 관장하는 관리)이 御寶를 받들고 모두 便殿의 앞문으로 나아가서 奉迎한다.

북이 三殿을 울리면 典儀가 문과창방관·무과창방관·치사관·이병조정랑·통찬 등을 데리고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奉禮郎은 종실과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며 문무과의 諸生을 모두 근정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문과는 동쪽으로, 무과는 서쪽으로 자리 한다.

判通禮가 밖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아뢰고 中禁이 殿을 진하면 임금이 輿를 타고 나오는데 緞扇과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임금이 장차 나오려고 하면, 儀仗이 움직이고 협률랑이 부복하였다가 휘(麀)를 들고 일어나며 악공이 축(杼:악기의 하나)을 쳐서 隆安之樂(會禮樂의 하나로서 御駕가 宮門을 나올때 연주하던 아악)을⁽²³⁾ 연주한다.

임금이 자리에 오르고 향로에서 향이 피어 오른다. 상서관이 御寶를 받들어 자리 앞 책상에 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이 휘(麀)를 눕히고 어(敵:타악기의 하나)를 끌어 음악을 그친다.

典儀가 “사배”라고 하면 通贊이 이를 받아 贊하여 群官이 모두 몸을 굽히고 舒安之樂(會禮樂의 하나로 王世子가 拜禮할 때의 아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면 음악이 그친다. 문과 창방관과 무과 창방관이 西階로 올라가서 각각 唱榜位에 나아가 東西로 마주 향하여 서면, 承旨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서 教旨를 받고 승지 한 사람은 동쪽 문으로 나가 문과 창방관의 북쪽으로 가서 서로 마주서고, 內侍別監이 公服 차림을 한 執事者가 文科榜案을 들고 뒤를 따르는데 두 사람은 마주 든다. 승지가 방을 집어서 문과 창

(23) 이것과 아래의 舒安之樂도 會禮樂인데, 張 師勛, 1982. 世宗朝音樂研究(서울:서울대出版部), pp. 78~85를 참조하였음.

방관에게 주면, 문과 창방관이 꿰어앉아 받아가지고 다시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가 꿰어앉아 이를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마주 펴 든다.

승지 한 사람은 서쪽 문으로 나가 무과 창방관의 북쪽으로 가서 동향하고 서면, 내시 별감의 공복차림의 한 집사자가 武科榜案을 들고 뒤를 따르는데 두 사람은 마주 든다. 승지가 방을 집어서 무과 창방관에게 주면, 무과 창방관이 꿰어앉아 받아가지고 다시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가 꿰어앉아 이를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마주 펴 든다.

승지 두 사람이 侍立하던 자리로 함께 돌아가면 文科唱榜官이 문과 제 1위의 이름을 부르고 中禁은 이를 받아서 전해 부르며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고, 武科唱榜官이 무과 제 1위의 이름을 부르면 中禁이 이를 받아서 전해 부르며 들어가 자리로 나아간다.

이와같이 차례로 사이를 두고 이름을 다 부르고 나면, 唱榜官은 함께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執事者는 榜을 책상 위에 두고 물러난다. 通贊이 “사배”하고 찬하면 諸生이 모두 몸을 굽히며 음악이 연주된다. 네번 절하고 일어나 다시 몸을 바로 하면 음악이 그친다.

처음 諸生의 절이 끝날 무렵에, 이·병조 정랑이 四階로 올라가서, 吏曹正郎은 文科唱榜位의 남쪽으로 나아가고, 兵曹正郎은 武科唱榜位의 남쪽으로 나아가 東西로 마주보고 서면, 承旨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서 教旨를 받들고는, 승지 한사람이 동쪽 문으로 나와 이조 정랑의 北쪽으로 西向하여 서면, 내시 별감이 公服차림을 한 執事者가 文科紅牌案을 들고 뒤를 따르는데 두 사람이 마주 든다. 승지가 紅牌函을 집어서 이조 정랑에게 주면, 이조 정랑은 꿰어앉아 이를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東階로 내려간다.

승지 한사람은 西쪽 문으로 나와 병조 정랑의 北쪽으로 가서 東向하여 서면, 내시 별감이 公服차림을 한 執事者가 武科紅牌案을 들고 뒤를 따르는데 두 사람이 마주 든다. 승지가 흥패함을 집어서 병조 정랑에게 주면, 병조 정랑은 꿰어앉아 이를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西階로 내려가고, 承旨 두사람은 함께 侍立하던 자리로 돌아가며, 집사자도 함께 물러간다.

通贊이 “궤(跪)”라고 찬하여 諸生이 모두 꿰어앉으면 紅牌를 나누어 下賜하는데 文科는 이조 정랑이 주고 武科는 병조 정랑이 준다. 다음에 꽃(花)과 酒果를 하사하는데 꽃은 內侍院이 맡고 주과는 茶房이 맡는다. 그 다음에는 개(蓋: 儀仗用으로서 햇볕을 가리기 위한 日傘)를 하사하는데 文武科 一等 세 사람에게 주며 司謁(임금의 말씀의 傳達을 맡던 사람)이 이를 관장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하고 찬하면 諸生은 모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음악이 연주되고,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음악이 그치며 奉禮郎이 文武科의 諸生을 나누어 인도하고 차례로 나간다.

처음에 諸生이 문으로 나가려고 하면 典儀가 종실과 문무 群官의 축하하는 儀節을 正朝와 冬至의 의식과 같이 일컫는다. 이를 마치고 나서 奉禮郎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고 자리로 나아가 北向하고 서면, 致詞官이 西階로 올라가서 임금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

향하고 꿇어앉는다.

통찬이 “跪”라고 贊하여 여러 관원이 모두 꿇어앉으면, 치사관이 議政 관직을 갖춘 것으로 하여 賀禮하는데 “臣 아무 등은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큰 運을 열어주셔서 賢良 俊秀 한 인물을 등용하게 되었으니, 禮로써 마땅히 慶賀하옵니다” 한다. 하례를 마치면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고 贊하면, 群官이 모두 부복했다가 일어나고 음악이 연주되며,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면 음악이 그치고 致詞官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판통례가 임금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禮가 끝났음을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協律郎이 부복했다가 廳를 들고 일어나니 음악이 연주된다.

임금이 자리에서 내려와 輿를 타고 大內로 돌아가는데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侍臣은 합문까지 따라가고 협률랑이 휘를 넓혀 음악이 그치면 奉禮郎이 종실과 문무 群官을 나누어 인도하고 차례로 나간다.

이상의 親試 及第者에게 주는 紅牌 즉 合格證書 授與式은 임금의 親臨下에 舉行되는 것이기도 해서이겠지만 그 절차의 進行이 한마디로 엄숙했음은 쉽게 짐작이 간다. 즉 시간이 나 순서를 알리는 嚴을 세번 울려서 차근 차근히 절차를 진행, 朝服과 公服 등의 正式 복장, 임금의 陞座에 피우는 쟁과 음악 연주, 그리고 여러번의 “국궁 또는 부복·四拜·興·平身과 꿇(跪)” 등등은 절차의 그 진행의 엄숙성을 말해 주는 것들이다.

이 儀注에서도 執事는 “判通禮典儀, 문무과창방관, 致詞官, 이·병조 정랑, 통찬, 및 감찰” 등이라고 하였듯이 여러 사람이 式의 進行을 分擔하였지만 그 중의 누가 식 전체의 司會를 專擔하였는지는 얼핏 알길이 없다. 하여튼 典儀가 四拜라고 하면 통찬이 그것을 큰 소리로 외쳤고, 창방관이 及第生의 이름을唱하면 中禁이 呼名해서 자리에 오게 하였으며, 殿上의 전의와 階下의 전의가 있었던 것 등은 重複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역시 엄숙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날 授與되는 것이 증서인 紅牌만이 아니라 “꽃고 酒果 또 특히 一等 세 사람에게 儀式用 日傘 내지 蓋” 등도 있었는데 이들은 아마도 축하와 勸獎을 겸해서 내려졌던 것이 아닌가 싶다.

4. 恩榮宴과 謝恩筵

放榜이 있으면 그다음에 遊街가 뒤따랐으니 즉 3일 동안 及第生에게 스스로 祝賀宴을 갖게 하고(세종 원년<1419> 4월 4일조), 그리고 그 數日後, 대체로 7일에서 20일쯤 후에는 임금의 은혜와 축하의 恩榮宴을 내렸다. 이것은 議政府習事 때에는 의정부에서, 그렇지 않은 때 즉 六曹直營時에는 禮曹에서 각각 베풀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세종 二十년<1438> 4월 25일조), 實錄의 기록을 보며는 대체로 세종 十六年(1434) 이전은 예조에서 베풀었고

그 이후는 의정부에서 있었다. 이 恩榮宴에는 연회를 주관하는 押宴官과 거기에 同席하는 赴宴信이 있었다. 그 坐席 배치는 賜宴을 받을 者가 判書와 同等以上の 品官이면 東쪽에 판서 參判 代言의 순서로 조금씩 물러나서 앉고 受賜者는 西쪽에 자리잡는다. 受賜者가 判書보다 品이 아래인 경우에는 판서는 北쪽, 참판과 대언은 조금 물러나서 東쪽에 자리잡고, 受賜者는 西쪽에 앉는다 예조판서가 有故면 다른 曹의 判書가 代行하였다(세종 十一年 <1429> 7월 25일조). 그리고 恩榮宴은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끝나면 入闕하여 謝恩라고 그 글을 올리는 것이 常例이었다.

謁聖榜의 경우이지만 一例를 들면, 세종 十六年(1434) 3월 11일에 임금이 勤政殿에 남서어 문무과의 放榜의 式을 그 儀注와 같이 舉行하고 이날 新及第 壯元인 崔恒(後日 世祖·睿宗·成宗代의 名宰相)은 集賢殿修撰에 任命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10일후인 21일에는 文武科恩榮宴이 의정부에서 내려졌는데 그를 주관한 押宴官은 영의정 黃禧와 우의정 崔閔德이고 同席者는 병조판서 崔士康이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인 22일에 文武科의 급제생은 謝恩箋을 올렸는데, 그 글은 대체로 四言句를 주로 하여 七言體를 섞은 文體로 되어 있으니 다음과 같다.

天地의 廣원(宏遠)한 度量은 크고 작은 것을 아울러 育成하는 법이오라, 저력(樛櫟)의 쓸모없는 材木이 유달리 雨露의 恩澤을 입게 되어, 공경히 그 후하음심을 받고 더욱 두렵고 황송한 마음 간절합니다.

업드려 생각하옵건대 臣等은 文學을 닦아온 미취한 존재이며, 武藝를 익히던 미친한 부류로서 조충전각(彫蟲篆刻)의 공부가 고루하온즉 어찌 經史子集 四部의 글을 알리 있사 오며, 射御의 才藝가 空疎하온바 본시 萬人을 대적할 武人이 아니옵나이다. 다만 오랫동안 두고 햇볕아래의 해바라기처럼 그 정성을 기울려 오던 차에 외람하옵게도 저 구름사이의 계수나무 가지를 꺾게 되어 漢나라 궁전에 이름이 呼唱되고 周나라 뜰에서 龍顏을 알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資級을 초월하여 특이한 은총을 加하심에 놀랐더니, 음악을 갖추어 화려한 잔치를 내려주신 恩澤에 다시 몸을 적시었나이다. 그 즐거움은 마치 서로 和唱하며 萍草를 먹는 사슴때 같았으며, 그 기쁨은 마름(藜) 속을 헤엄쳐 노는 물고기와도 같았읍니다. 그 은혜 前古에 없던 바이라 감격함이 그지없나이다.

明하시고 善하시고 聖하시며 神하사,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任用하시매 和親하고 광명한 治化가 크게 천명되었고 臨軒하사 才藝를 시험하시고 文武의 人材를 거두시니, 드디어 이 猥瑣한 무리들로 하여금 특별하옵심 恩澤을 얻어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臣等은 삼가 節義를 지키고 한결 忠誠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을 섬김으로써 周나라 宜王의 과실을 補弼한 仲山甫를 希求하고 漢나라 高祖 때 千里밖에서의 必勝의 計策을 세운 張子房을 본받겠나이다. (24)

나라의 及第者에 대한 恩榮은 以上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榮親宴도 있었으니, 이것은 그 父母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한편 시골의 儒生을 권장하며 人材를 作興

(24) 上揭 실록, pp.139~140을 거의 그대로 따랐음.

하려는 뜻에서도 거행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종 十一年(1429) 4월 15일에는 “新及第榮親儀”가 제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신급제자가 고향 마을의 五里亭에 이르러 그 마을의 관리와 사람들은 冠帶를 갖추고 나와서 맞이하고, 먼저 鄉校에 이르러 文廟에 참배하며 다음에 守令廳에 나아가 돈수제배의 禮를 하고 그다음에 父母의 집으로 가는데 守令도 함께 따라간다. 守令은 그 부모와 함께 客舍로 돌아와서 향고의 生徒로 하여금 慶賀를 하게 하고, 이어서 榮親宴을 베풀되 男女는 각각 大廳마루를 달리하고 饌具는 적절히 供辦하였던 것이다.

父母가 없는 新及第는 調聖, 守令廳의 行禮 및 鄉校生의 축하를 마치고 간단히 酒果를 베풀고는 罷하며 신급제의 兩親에게의 祭物을 官家에서 갖추어 주면 날을 정해서 분묘에 배례하게 하였다. 한편 이달 18일조를 보면 서울에서 영친하는 사람은 禮曹에서 啓聞하여 酒樂을 下賜하였던 것이다.

맺 는 말

지난번에 親策의 題目들을 分析하여 그 體制와 內容과 그리고 다른 分野 등을 살펴 보았는데, 결국 策試를 통하여서는 科學的 思考力의 기초가 되는 “어떻게”를 함양하려고 努力했던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번에는 策과 더불어 親試에서 課했던 詩文등을 살펴 보았는데, 우선 그 종류는 表, 箋論, 賦와 詩 및 明經이고 모두 19題이며, 이들은 策의 경우와 같이 定規의 殿試에서 보다도 그밖의 전시에서 더 많이 出題되었었다. 明經을 除外하고 다섯가지는 다 文體인데 그 각각 獨特한 뜻과 用途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 人君에게 올리는 글체이었던 者와 箋은 특히 事大 즉 中國과의 外交에 있어서 결실한 것이어서인지(세종 十三年<1431> 4월 12일조), 10편이나 되어 本稿에서 다룬 題目 전체의 53%나 된다.

이러한 여러 文體의 試題는 龍飛御天歌를 비롯하여 中庸과 시경, 서경, 춘추자시전 역학 계몽 및 예기 등 四書 五經類와 史記, 전후한서, 삼국지, 北史, 신구당서 宋史, 소미통감 등의 史書와 그리고 회남자, 新書, 困學紀聞 등의 여러 冊에서 出題되었었다. 또 이들 여러 試題는 時務 즉 實際와 理論의 문제에 걸쳤는데, 아무래도 讀書中心이어서인지 策題와는 좀 달리 이론인 것이 약간 많은 것 같다.

시험의 管理에 있어서 出題는 대체로 임금이 考試官과 함께 비밀히 作成하였고, 고시관으로는 세 사람의 讀卷官과 네 사람의 對讀官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對讀官은 宋나라 省試의 대독관은 달라서 易書와는 관계없이 독권관을 보좌했던 것이다. 그리고 시권의 심사는 대체로 고시관의 결정에서 끝나지만 때로는 임금이 결정 또는 병경도 하였다.

시험 當日과 合格者 발표일에는 다 임금이 親臨下에 엄숙한 儀式을 통해서 行사는 진행

되었었다. 그리고 합격자에게는 本人을 위한 恩榮宴과 그 父母를 위한 榮親宴 등과 같은 賜宴이 있어서 榮光과 勸獎도 따라 있었던 것이다. 되풀이가 되지만 끝으로 親試에서는 주로 策을 통하여 思考力의 함양, 그리고 주로 詩·文 등을 통해서는 讀書力의 深化와 文章力의 伸張에 각각 힘을 기우렸던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다.

參 考 文 獻

- 마(馬 端臨). (1319?). 文獻通考. 卷二十八~三十九 選舉考 1~7(臺北:新興書局 縮刷冊 一과 二, 1959).
- 모로하시(諸橋 徹次). (1955~1960). 大漢和辭典. 全十三卷. 東京:大修館書店(昭和 三十~三十五年). 縮寫版, 1968(昭和 四十三年).
- 문헌(增補文獻備考). (1908). 卷之 二百二~二百十三 學校考 1~12(서울:東國文化社 縮刷版 下卷. 1964).
- 미야사끼(宮崎 市定). (1946). 科擧. 大阪:秋田屋(昭和 二十一年).
- 미야사끼. (1963). 科擧. 中公新書, 15. 東京:中央公論社(昭和 三十八年).
- 박(朴 尙萬). (1956). 한국교육사, 상권. 서울:대한교육연합회(檀紀四二八九年).
- 아라끼(荒木 敏一). (1969). 宋代科擧制度研究. 京都:京都大學 東洋史研究會(昭和 四十四年).
- 역대(歷代)의 實錄: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探求堂의 縮刷版 I~XIV. 1968~1969). 그리고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의 國譯 태종실록, 1974~1977과 세종실록, 1968~1975.
- 장(張 師勛). (1982). 世宗朝音樂研究. 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
- 출저(拙著). (1976). 韓國教育行政史研究. 서울:教育出版社.
- 출저. (1980). 韓國教育行政史研究草. 서울:載東文化社.
- 크락케(Kracke, Jr., E.A.). (1953). *Civil Service in Early Sung China 960~1067*.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A Further Study of the *Ch'in-si* or Royal Civil Service Examinations

Kil Soo Kang

Abstract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study conducted last year on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questions posed in the 'royal civil service examinations' or *ch'in-si*. The previous study analyzed the questions set in the 'problem-solving paper' or *ch'in-si ch'aek*, which dealt with certain problems of national importance and also textual problems—usually based on seeming conflicts in passages the candidate had studied. The construction and content of some sixty *ch'aek* questions, collected from *the Annals of the Yi Dynasty*, were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the major emphasis was placed on the writing of compositions by which the examinee might demonstrate his originality and skill in reasoning and expression. Now, it is almost a truism that a skill on reasoning will usually come from extensive practice of the ability to think. The study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ability to think was perhaps the most important object of learning in those days.

The present study is a further analysis of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royal civil service examinations. To demonstrate their mastery of various styles, candidates were required to compose a 'poem' or *si*, an 'appeal to the king' or *p'yo*, an 'argument' or *non*, a 'memorial to the throne' or *chon*, a piece of 'poetic prose' or *pu*, and also to answer questions on the meaning of selected passages from 'the classics' or *myong-kyong*. Some eighteen topics for these differences styles and set passage from the classics were collected for investigation from *the Annals* mentioned above.

It was found that the topics were possible to answer chiefly with the extensive knowledge of the following great books, as well as the sufficient practice of writing in the styles. The books for the candidate to read were the four books like Doctrine of the Mean or *Chung Yung*, five classics like Book of Odes or *Shih Ching*, history books of China like Historical Records or *Shih Chi*, miscellaneous books, and the Songs of Flying Dragons or *Yongbi Och'on Ka*, the Korean eulogy to celebrate the founding of the Yi dynasty.

In terms of education, the *ch'in-si* as a whole demanded a high degree of proficiency in the reading, and writing skills, while the *ch'in-ch'aek* emphasized thinking ability in particular.

As for administering the examinations, the questions were secretly prepared in the palace by the examiners and were usually approved by the king. The three chief examiners were known as *tokkwŏn-kwan* or 'Readers', and the four assistant examiners were called the *taetok-kwan* or 'Co-Readers'. They were appointed from among the senior ministers.

It was customary to conduct the royal examinations with ceremony, the 'palace examination ceremony' or *chŏnsi-ŭi*. The examinations and ceremonies, which took up one day, were usually held at the palace or occasionally in the hall of a Confucian temple in the capital city. The 'degree ceremony' or *pangpang-ŭi* followed a few days later. Here, the certificates or *hong-p'ae* written on red paper, together with *bouquets*, wine and fruit were awarded to the successful candidates. And the top three candidates were further honored by receiving large 'processional parasols; or *kae*.

There was then held a 'congratulatory banquet' or *ŭnyŏng-yŏn* given by the king for all the successful candidates. The grantees of the banquet, however, had to go to the palace the next day and usually offered what was known as a *saŭn-chŏn*, or 'memorial of thanks to the throne'.